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3. 3.



이 진 환 의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제안자 : 이진환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신규 공무원들의 임용을 축하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달서구 의회 공무원으로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
-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으로 직원 사기 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을 통한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5조에는 직원 후생복지사업 중 “신규공무원 임용축하 지원” 및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 을 새로 추가하였고,

- 안 제16조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후생복지운영위원회 구성 중, “외부위원 위촉”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 및 정비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3년 3월 3일부터 3월 13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 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공무원 임용 축하 및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00923018
----------	----------

발의연월일: 2023. 3. 3.

발 의 자: 이진환 서보영 김정희
박왕규 김장관

1. 제안이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신규 공무원들의 임용을 축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달서구 의회 공무원으로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독감주사 등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사기진작으로 인한 업무능률 향상으로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직원 후생복지사업 중 “신규공무원 임용축하 지원” 및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을 추가함 (안 제5조)
- 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관련 조문을 삭제함 (안 제16조)

3. 참고사항

- 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1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 다. 관계법령 : 붙임 3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 라.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신규공무원 임용축하 지원

11.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

제16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임명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p>1. ~ 9. (생략)</p> <p><신설></p> <p><신설></p> <p>10. (생략)</p>	<p>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p> <p>-----</p> <p>-----</p> <p>-----</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u>신규공무원 임용축하 지원</u></p> <p>11. <u>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u></p> <p>12. (현행 제10호와 같음)</p>
<p>제1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p> <p>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u>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p>1. <u>당연직 위원: 소속 공무원</u></p> <p>2. <u>위촉직 위원: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③ <u>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p> <p>④ (생략)</p>	<p>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 <u>소속 공무원</u> ----- <u>임명</u> 한다.</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③ (현행 제4항과 같음)</p>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
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